

부속서 I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합치 조치

영국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유보목록은 제7나.12조(비합치 조치) 제1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 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영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7나.5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7가.3조(내국민 대우)

나. 제7나.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다. 제7나.4조(시장접근) 제1항 또는 제7가.5조(시장접근), 또는

라. 제7가.6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언급된 경우, CPC, ISIC 개정판 3.1에 따라 또는 유보항목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된 바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CPC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 시리즈 M No. 77, 국제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를 말한다.

마. **ISIC 개정판 3.1**이란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통계문서 시리즈 M No. 4, ISIC 개정판 3.1,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2002)를 말한다.

바. **관련의무**는 제7나.12조(비합치 조치) 제1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 제1항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사.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아.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또는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조치**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차별적인 조치는, 부여되는 양허의 가용성, 수 및 범위에 대한 제한과 모라토리엄 또는 금지의 부과를 포함하여, 천연자원 및 환경의 보존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7나.4조(시장접근) 제1항 또는 제7가.5조(시장접근)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1.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법률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1의 일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우, 1974년 사무변호사법, 1985년 사법행정법 및 2007년 법률서비스법 스코틀랜드의 경우, 1980년 사무변호사(스코틀랜드)법, 2010년 법률서비스(스코틀랜드)법 및 2025년 법률서비스 규제(스코틀랜드)법 북아일랜드의 경우, 1976년 사무변호사(북아일랜드)령 모든 관할구역의 경우, 1999년 이민 및 망명법 이에 더하여, 각 관할구역에 적용 가능한 조치는 전문기관 또는 규제기관이 정한 모든 요건을 포함한다.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관련 전문기관 또는 규제기관은 특정 영국 국내 법률 서비스 의 제공을 위하여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 비차별적인 법적

형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전문기관 또는 규제기관은 이민에 관련된 특정 영국 국내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거주를 요구할 수 있다.

2.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지식재산 대리인

산업분류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가.4조)
현지주재(제7가.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5부 및 부칙 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식재산 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현지주재가 요구된다.

3.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수의료 서비스

산업분류 CPC 93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1966년 수의사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오직 영국 왕립 수의사 협회(RCVS)의 구성원만이 영국에서 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RCVS 지침은 수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실제 주재를 요구할 수 있다.

4.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산업분류	CPC 83104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의하여 영국 법에 편입되고 항공서비스운영(개정 등)(EU 탈퇴) 규정(S.I. 2018/1392)에 의하여 개정된, 유럽연합내 항공서비스운영 공통규정에 관한 2008년 9월 2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 1008/2008호(재구성법) 제13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승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항공기의 임대 또는 리스(단순임차)에 대하여, 영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적용 가능한 항공기 등록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영국 항공사가 당사자인 단순임차 계약은 사전 승인 및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등록 항공기의 사용에 적용 가능한 그 밖의 조건과 같은, 항공 안전에 관한 국가법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가 특정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소유 및 통제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5.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의하여 영국 법에 편입되고
2018년 컴퓨터 예약 시스템(개정)(EU 탈퇴) 규정(S.I.
2018/1080)에 의하여 개정된, 컴퓨터 예약 시스템 행동 규
범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 규정 (EEC) 제2299/89호를 폐
기하는 2009년 1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80/2009호 제8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에 대하여, 영국 밖에서 운
영하는 CRS 서비스 공급자가 영국 항공사에게 영국에서 부
여되는 것에 상응하는(즉,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지 않
거나, 비영국 항공사가 영국의 CRS 서비스 공급자에게 영국
에서 부여되는 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영국에서 운영하는 CRS 서비스 공급자가 비영국 항공사에게
또는 영국 항공사가 비영국 CRS 서비스 공급자에게 각각 상
응하는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

다.

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우편 및 쿼리어 서비스

산업분류 CPC 71235의 일부, CPC 73210의 일부 및 CPC 751의 일부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2011년 우편서비스법 제3부
2000년 우편서비스법 제5부, 제6부, 제7부, 부칙 6 및 부칙 8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공공 도로 상 우편함의 설치 체계, 우표의 발행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편 운영자는 특정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 또는 보상기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1997년 공항(지상조업) 규정 규정 10, 규정 11, 규정 14 및 규정 19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지상조업 서비스의 개방수준은 공항의 크기에 달려 있다. 각 공항의 공급자 수는 제한될 수 있다. 대형 공항의 경우, 그 제한은 2개 이상의 공급자로 한다.

지상조업 또는 자체조업 시장 접근에 대하여,

가. 한국이 영국의 지상조업 서비스 및 자체조업 공항 이용자에게 영국이 한국의 지상조업 서비스 공급자 및 자체조업 공항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또는

나. 한국이 영국의 지상조업 서비스 및 자체조업
공항 이용자에게 한국 또는 비당사국의 지상조
업 서비스 및 자체조업 공항 이용자에게 부여
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영국은 「1997년 공항(지상조업) 규정」에 따라 한국의 지
상조업 서비스 및 자체조업 공항 이용자에게 그들이 부여받
은 대우와 비교하여 차등적인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8.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지원 서비스

산업분류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가.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2018년 과세(국경 간 무역)법 제1부, 제45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6조, 부칙 1, 부칙 2, 부칙 6 및 부칙 7

1979년도 관세 및 소비세 관리법 제25조, 제25A조 및 제93조, 제8B부 및 제166B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오직 영국에서 설립된 인만이 통관 서비스 및 임시 보관 시설 또는 세관보세창고 사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영국 거주자와 영국에 영구적인 영업소 또는 등록사무소를 가진 인을 포함한다.

9.

분야	에너지 관련 활동
하위분야	광업 및 채석업
산업분류	ISIC 개정판 3.1 1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조치	1998년 석유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 육상 및 해상에서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광업 및 채석업 서비스는 그 면허 보유자에게 제한없이 제공될 수 있다.

2. 이 유보항목은 육상 및 해상 활동 모두에 대하여 발급된 생산 면허에 적용된다. 면허 보유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는 영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회사가 영국에 주재하는 직원을 보유

나. 기업청에 영국 회사로 등록, 또는

다. 기업청에 외국 회사의 영국 지점으로 등록

3. 생산광구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면허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기업청에 영국 회사로 등록될 것, 또는

나. 통상적으로 직원의 주재를 요구하는 「2010 년 법인세법」 제 1141 조에 정의된 대로 영국에 고정된 영업소를 통하여 영업을 수행할 것

4. 이 유보항목은 면허 보유자에 대한 광업 및 채석업 서비스의 제공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서비스는 생산 면허 보유자가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한 제한 없이 제공될 수 있다.”